

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4371 |
|----------|------|

2025. 12. 04.
총무위원회

1. 제정 이유

-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생활 환경 유지 등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검토 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근거하여,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생활환경 유지 등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칙 총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본칙에는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,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,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,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, 시행규칙(안 제6)을,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.

○ 취약계층의 위생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세탁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,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이나 조문 체계 및 형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.

※ 사회보장사업 협의대상 제외(2025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협의 운용지침)

● (중앙사업지침에 기속된 지자체 의무사업) 지자체 사업시행에 대한 주요내용(선정기준, 지원수준, 전달체계 등)이 중앙사업지침에 기속된 지자체 사업(예산만 집행)의 경우 '중앙부처'가 일괄 협의함으로써 협의대상에서 제외

☞ 예 :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, 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,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만기퇴소아동 또는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

단, 중앙사업지침 내용과 상이(변경, 확대 등)하거나 중앙사업지침이 있으나 포괄적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, 주요내용(대상자 선정기준, 지원수준, 전달체계 등)을 지자체가 정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대상임

☞ 예 : ① 지침내용과 상이한 경우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시 추가지원(대상자 확대 및 본인 부담금 일부 추가 지원),
② 세부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(지역 자율형 사회보장사업 참고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수정의결(출석위원 6명)

※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수정안 참고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- 붙임 1.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4371-1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안연월일 : 2025. 12. 04.
제안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 이유

- 정의 규정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.

2. 수정 내용

-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함.

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

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“복지사각지대”란 신체적·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위생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.</u>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|

(제정안+수정안)

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이불빨래방”이란 세탁기,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·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세탁서비스”란 이불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·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·건조 후 배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3. ~~“복지사각지대”란 신체적·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위생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.~~

제3조(지원대상)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운영방법) 시장은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·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비 등 지원) ① 시장은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·인건비 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